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안전팀
2020.2.4.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2020.2.14.

국토교통부, '건축물 관리점검' 시행

2019년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 건축물은 3년 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 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알려야 하며,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철탑·옹벽 등 공작물도 점검 대상으로 확대한다.

향후,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지원사업' 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2월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며,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올해는 신청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모두 충족)		
		가연성 외장재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연면적 1,000㎡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다중이용업소: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에 한함